

사전공고제 폐지, 대부분 통신사업 신규사업자 진입허가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정보통신부는 7월 4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수립

- 발표하였다. 통신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간 통신망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리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신사업경쟁구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관련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8월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편집자주>

주요내용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조기구축

- “선국내경쟁, 후국제경쟁”의 원칙하에 가능한 한 조기에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 우선 금년중에는 현행법 체제하에서 가능한 국내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시내·시외전화, 저궤도 위성통신(LEO)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사업에 신규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희망자간 과열경쟁을 예방하고 중견기업등 다수 사업자의 참여로 통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허가대상사업을 동시에 공고하고 동일인이 대주주로서 복수사업에 신청하는 것은 불허한다.

또한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2단계 심사방식으로 한다.

1단계 : 전기통신법상의 자격심사

2단계 : 자격있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연구개발에 대한 출연금의 최고액으로 사업자를 최종 선정

◦ '96년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의 허가신청을 개방하여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토록 한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허가대상사업과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사전공고도록 되어 있어 사전공고 없이는 사업허가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바, 정부의 사전공고 없이도 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시내전화는 실질적인 경쟁가능성과 보편적서비스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가시기를 결정한다.

- 그리고 '96년 4월에 끝날 전망인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에 따라 '97년중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재개정하여 '98년부터는 국내·외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주도적 통신사업자(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

- 한국통신이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발전하고 세계시장에도 진출·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이를 위하여 현행 통신사업 경영상의 정부규제제 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한국통신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방침이며 관련법의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이와 아울러, 한국통신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내부 경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영혁신방안을 조기에 강구하여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 또한,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세계시장 진출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통신은 무선등 다양한 통신사업에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주도적 통신사업자(한국통신)와 경쟁사업자(신규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간 회계분리 및 보조금지, 상호접속 등 관련제도를 확립하고 규제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주파수 자원배분 및 번호관리 등 국가통신자원의 관리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현재의 통신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통신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고 WTO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이를 독립규제기관화 할 방침이다.

통신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배 경

1. 통신사업의 세계화 추진

세계 통신시장은 가장 급격하게 발전되는 분야로서 국제경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고 APEC회원국내에서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조차도 경쟁정책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신시장의 국제경쟁은 불가피 하며 이에 대처하는 방안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기간통신망의 효율적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도적 통신사업자와 신규 통신사업자간의 유효한 경쟁체제구축이 시급하다.

2.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유지

국가기간통신망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하부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통신공사 독점운영체제로는 취약점이 있어 경쟁적 사업구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본방침

-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원칙”하에 가능한 한 조기 에 전면적인 국내경쟁 체제구축
- 한국통신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발전
-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보장

3.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세계 통신시장개방에 능동적 대처

WTO 기본통신협상에서는 미국, EU, 일본의 주도로 '96년내에 각국의 통신시장개방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됨으로서 우리의 통신사업자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외국사업자들과 당당히 겨루어 이길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1. 통신사업 경쟁체제 확립

- '95년중 현행법령으로 가능한 국내신규사업자 추가 허가
- '96년 관련법규 개정(1차)으로 전면적 국내경쟁 체제 구축
- WTO 협상결과에 따라 '97년 관련법규를 개정(2차)하여, '9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제경쟁 확대

2. 한국통신의 경쟁력 확보

-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도적 사업자로 발전
- 조기에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
 - 경영상의 자율성 · 융통성을 확대
 - 내부 비효율성 제거등 경영 혁신

3.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제도 확립

- 주도적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유효한 경쟁여건 조성
- 통신위원회 기능강화등

추진계획

1.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조기구축

가. 사업허가 신청에 있어서 정부의 사전공고방식 폐지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허가대상사업과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사전공고토록 되어 있어 정부의 사전공고가 없는 한 사업희망자의 통신시장진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음성전화사업의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사전공고방식에 의한 사업자허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통하여 통신사업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허가 신청에 있어서 정부의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한다.

- '96년중 법령을 개정(1차)하여 통신사업 참여희망자가 정부의 사전공고 없이도 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정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배정된 주파수를 일정기간 미사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나. 년도별 경쟁확대 계획

(1) '95년도 추진계획 – 현행법 체제하의 국내경쟁 확대

허가대상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저궤도위성통신(LEO)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사업(별첨 참조)으로 하며 허가방법은 현행법에 의한 사전공고방식으로 하되 2단계 심사방식을 채택하여 그 절차를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통신사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가대상사업을 동시에 공고하고 동일인이 대주주로서 복수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또한 2단계 심사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1단계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자격심사를 거쳐 2단계로 정보통신연구개발에 대한 출연금의 최고액으로 사업자를 최종선정한다. 더불어 소요통신장비의 안정적 수급방안 병행을 실시한다.

(2) '96년도 추진계획 – 전면적인 국내경쟁 체제 구축

허가대상은 모든 통신사업(별첨 참조)이며 시내전화는 실질적인 경쟁가능성과 보편적서비스 보장을 고려하여 허가시기 결정, '96년중 법을 개정하여 정부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한다. 기존 서비스는 정기신청, 신규 서비스는 수시신청 제도화 또한 지분제한, 요금 규제 등 각종 규제의 개선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촉진유도한다.

(3) '98년도 추진계획 – 단계적 국제경쟁 확대

WTO / NGGBT협상 결과에 따라 '97년중에 법을 재개정하여 '9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제경쟁을 확대한다.

2. 주도적 통신사업자(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

-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발전
-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발전

- 경영상의 자율성 · 융통성 확대

- 통신사업 경영상의 정부규제제도 전면 재검토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동법 제2조를 개정(KBS의 예)하거나 정부지분 49%이하로 조정토록 한다.

- 한국통신 내부의 경영상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영혁신방안을 조기에 강구·시행
-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세계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통신사업 참여 허용·사업간 회계분리 및 보조금지를 조건으로 한다.

3. 주도적 통신사업자와 경쟁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조성

가. 공정경쟁 정책기능 강화

- 공정경쟁 제도의 확립

엄격한 회계분리 및 내부보조 금지와 공정한 상호 접속 보장, 경쟁원리 정착을 위한 요금규제를 완화한다.(국가기간통신망 운영, 재해·비상시 통신대비, 보편적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통신사업자들의 의무부 담정도 고려)

- 공정경쟁 규제절차의 개선

규제관련 규정의 명문화, 규제절차의 공식화, 의견 수렴과정의 공개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

-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정부의 통신자원 관리 효율화

주파수자원 배분의 공정성·효율성 확대 및 합리적 번호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현재의 통신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통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분쟁해결 등에 관한 규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무국 신설과 WTO 협상 결과에 따라 독립규제기관화 추진이 시급하다.

향후 추진일정

1. 기본정책방향 확정

- 7월 초순 관련기관 협의
- 7월 중순 정보통신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1~2회)
- 7월 하순 공청회 개최(KISDI 주최)
- 7월 말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기본정책방향 확정

2. 정책실행을 위한 후속조치 ('95년내 필요조치)

- 통신사업자 추가 허가계획 공고 및 선정
- KT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혁신방안 수립·시행
- WTO/NGBT 양허계획서(Offer List) 작성 및 협상 추진
- 통신장비 등 수급방안 수립·추진
 - 장비별로 국내생산, 외국과 공동생산, 외국 수입방안 등
- 통신사업자용 주파수배분 및 운용효율화방안 수립
-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촉진방안 수립·시행
 - 민간참여 확대방안, 초고속기술기준(안) 작성 등
- 통신관련법 개정방향 및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등 마련

〈별첨〉통신사업영역별 신규사업자 허가시기

〈'95년 허가사업〉

- 국제전화

- 제2사업자가 3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복점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어 경쟁체제로 전환

- 회선임대사업(전용회선사업)

- 경쟁적 광케이블망 확충을 유도하여 시내부문의 초고속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기에 경쟁도입

- PCS

- 국내 기술개발 상황을 감안하여 주파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자 허가

- TRS전국·지역사업, CT-2

- 사업성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 주파수가 허용하는 한 사업자 허가

- 무선데이터
 - 주파수가 허용하는 한 사업자의 진입을 허가하고 음성, 데이터 혼합서비스 등 제공 가능한 역무범위를 확대
- 무선후출
 - 대부분 수익분기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경쟁촉진을 위해 추가 사업자의 진입허가

〈'96년 허가사업〉

- 시외전화
 - 시외전화 경쟁사업자가 금년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므로 경쟁사업자 서비스개시 이후에 신규사업자를 허가
- 위성통신서비스
 - 위성통신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96년 정부 사전공고제도 폐지후 허가추진
- LEO
 - 사업의 개념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국

내의 사업주체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며 '96법개정이후 허가여부 검토

• 사업자가 신청하는 통신서비스

- 양방향 무선후출 등 사업자가 신기술에 의해 가능하다고 신청하는 신규서비스(초고속망사업자가 신청하는 서비스포함)는 현행법내에서 허가하기 곤란하므로 '96년 법개정이후 허가추진

※ 이동전화는 새로운 주파수대역을 개별해서 신청할 경우 새로운 통신서비스 범주로 처리

〈시내전화 사업〉

- 시내전화는 가장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이고, 다른 통신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므로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의 진척상황, C-ATV전송망 구축 및 운용상황, 통신사업 경쟁 확대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 크롭스키밍을 감안한 사업구역 책정문제, 보편적 서비스 보장 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허가추진

〈참고〉 통신시장 개방의 현실과 요구

구 분		우 리 현 황	외 국 현 황	개방 요구수준
허가 제도	허가신청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사전공고에 의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사전공고없이 희망자가 자유신청(일부는 주파수 경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사전공고방식 폐지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의무, 보편적서비스 출연, 연구개발출연 의무 등 부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서비스 출연이외에는 거의 부과안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서비스에 부분적으로 기여, 그외에는 모두 철폐
망 경 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인 사업자수 제한은 없으나 정부공고방식에 의해 실질적으로 진입이 제한되어 있음 • 정책적으로는 복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 정책적으로 사업자수 제한 없음 • 예외 : 복점 -영국(국제전화) -호주('97. 6. 30에 개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 정책적인 사업자수 제한 철폐 -시내 · 시외 · 국제 -유 · 무선 등 전 분야

※ 외국의 경우 법적으로 음성전화의 독점을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사업자 수와 사업영역제한은 면허부여를 통해 하고 있음.